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성폭력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성폭력 피해의 조사·심의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보상지원위원회 운영, 관련 서식 및 법령 문구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상지원위원회 구성 및 위원 해촉기준 정비(안 제2조)

성평등가족부장관을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에 추가하고, 위촉위원의 해촉기준을 마련함.

나. 성폭력피해조사소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8조)

성폭력 피해의 인정 및 피해 정도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성폭력피해조사소위원회를 설치함.

다. 성폭력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 마련(안 제12조의2, 별표 6 및 별표 7)

성폭력 피해유형을 구체화하고, 노동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중대유형·중복피해·특수피해 등에 따른 가산기준을 마련함.

라. 성폭력 피해 심의·결정 원칙 마련(안 제12조의2)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의·결정하고, 성차별적 의식·관행에 따른 불이익 및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마. 보상금 등 지급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제6호·제7호서식)

관련자 유형별 지급신청서 체계를 재구성하고, 성폭력 피해 보상 관련 신청·결정사항 및 행정소송 관할법원 표기를 정비함.

바. 법령 문구 정비(안 제24조)

띄어쓰기 및 일본어 투 표현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보상지원위원회의 구성)”을 “(보상지원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3항) 중 “분과위원회”를 “그 밖에 분과위원회(제3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조사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에 성폭력 피해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성폭력피해조사소위원회를 둔다.

④제3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조사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가폭력(「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과 여성폭력(「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여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성폭력피해조사소위원회의 위원 위촉사실을 보상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성폭력피해조사소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의 인정 및 피해 정도의 판단을 위해 신청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진술 청취, 사실확인 및 증거자료 확보 등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피해 사실·유형·정도 및 별표7의 가중요소 해당 여부를 종합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심의 특례) ① 법 제5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은 별표6으로 정하는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그

피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성폭력 피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여,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별표7로 정하는 성폭력 피해 가중요소를 고려하여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노동력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피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은 100분의 15를 기본값으로 한다. 다만,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애등급에 따른 노동력 상실률을 기본값으로 하되, 해당 장애등급에 따른 노동력 상실률이 100분의 1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기본값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값에 다음 각 호의 가산비율을 모두 합산하여 노동력 상실률을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노동력 상실률은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다.

1. 중대유형 피해를 입은 경우: 별표7의 중대유형 각 요소에 따른 가산비율. 다만, 가중 요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그 가운데 가산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 중복피해 또는 특수피해를 입은 경우: 별표7의 중복피해 및 특수피해 각 요소에 따른 가산비율

④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노동력 상실률과 일치하는 장애등급을 별표3에 따라 적용한다. 일치하는 노동력 상실률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상위의 노동력 상실률에 해당하는 신체장애등급을 적용하여 최

중 노동력 상실률을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기준은 상이자에 대한 기준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때 관련자 또는 유족이 성폭력 피해를 원인으로 이미 상이자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보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한다. 다만, 성폭력 피해와는 다른 원인으로 상이자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⑦ 보상심의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는 성폭력 피해 관련 사항을 심의·결정할 때 국가폭력과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사건 당시의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으로 인하여 가족·공동체·지역사회 및 교육·고용·의료·수사·재판 등 각 영역에서의 불이익한 처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급신청”을 “지급 신청”으로, “이를 공고”를 “공고”로 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성폭력 피해 유형(제12조의2 제1항 관련)

피해유형	피해내용
재생산폭력	강간, 구타 또는 신체적 가해 등으로 임신·유산·생식기능 상실 및 장애 등을 야기하여 재생산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강간준강간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성고문	연행·수사·조사·구금 등의 과정에서 정보나 자백을 얻을 목적으로 성적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강간미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신체에 접촉하여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별표 7]

성폭력 피해 가중요소 및 노동력 상실을 가산 비율(제12조의2 제1항 관련)

구 분	가중 요소	가산비율
중대유형	가. 재생산폭력	45%p
	나. 강간·준강간·유사강간	45%p
	다. 성고문	45%p
	라. 강간미수	25%p
중복피해	가. 동일한 계기로 서로 다른 2개의 중대유형 피해를 입은 경우	10%p
	나. 동일한 계기로 서로 다른 3개 이상의 중대유형 피해를 입은 경우	20%p
	다. 별개의 행위로 2회의 중대유형 피해를 입은 경우	10%p
	라. 별개의 행위로 3회 이상의 중대유형 피해를 입은 경우	20%p
특수피해	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피해인 경우	10%p
	나. 피해 당시 만 19세 미만인 경우	10%p

비고

1. 중복피해 중 가목·나목은 하나의 일련된 행위 또는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적용하되 수개의 피해가 중복된 경우 가장 큰 피해를 기준으로 하며, 다목·라목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서로 독립된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적용한다.
2. 동일한 계기로 발생한 중대유형의 중복(가목·나목)과 별개 행위로 발생한 중대유형 횟수의 중복(다목·라목)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중대유형 피해는 그

자체만으로 다목·라목의 횡수 중복에 따른 둘 이상의 피해로 보지 않는다.

3. 선행 성폭력 행위가 종료된 후 새로 성폭력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 또는 계속된 연행·구금 상태에서 발생하였더라도 별개의 행위로 본다. 선행 성폭력 행위의 종료 여부 및 별개의 행위인지 여부는 행위의 중단 여부,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장소의 변경 여부, 가해행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4. 특수피해 가목의 경우, 2명 이상의 가해자가 각각 강간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중복피해 다목·라목의 별개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서로 독립된 특수피해 가목의 행위가 반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중복피해 다목·라목을 적용할 수 있다.
5. 하나의 일련된 행위 과정에서 강간미수 후 강간·준강간 또는 유사강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강간미수를 별도의 중대유형 피해로 보지 않는다.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 질병·후유증 사망자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관련자	성명(한글) (한자) 등록기준지	생년월일	당시 주소
신청 사유	①[] 사망	198 년 월 일	사망
	①[] 행방불명	198 년 월 일경	행방불명
	①[] 질병· 후유증 사망	년 월 일경	사망
	당시 나이		②당시 부양가족
	③당시 직업		④당시 월수입
관련 경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라)에 작성		
⑤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관련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본인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관련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제적등본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관련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유족대표자선정서 1부(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보상금등 수령위임장 1부(이민, 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 1부(관련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 1부(관련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란에는 사망, 행방불명, 질병·후유증 사망 중 해당하는 란의 []에 "√"를 표시하고 일자를 적습니다.
- ②란에는 관련자가 당시 부양하고 있던 가족수와 가족명칭을 적습니다.
- ③란에는 관련자의 당시 직업을 구체적으로 적고, ④란에는 사망자·행방불명자 사망 또는 행방불명 직전 3개월간 월수입액의 평균을 적고, 질병·후유증 사망자는 상이 직전 3개월간 월수입액의 평균을 적습니다.
-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⑤란에 적지 않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마)에 적습니다.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상이자, 성폭력 피해자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	------	------	-----

관련자	성명(한글) (한자) 등록기준지	생년월일
		당시 주소

신청 사유	① 신청 유형 [] 상이 [] 성폭력 피해 ※ 상이와 성폭력 피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표시합니다.		
	공통	②당시 직업	③당시 월수입
	상이	상이 일자 19 년 월 일	당시 나이 세
		④상이 부위	
		⑤상이 내용	
		⑥요양으로 인한 수입손실기간	⑦요양으로 인한 수입손실금액
		⑧향후 치료 치료 내용:	추정 치료비:
		⑨간병 [] 필요 [] 불필요	
		⑩보장구 보장구 명칭:	시가: 내구연수:
	성폭력 피해	성폭력 피해 발생 시기(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당시 나이 세
관련 경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라)에 작성	

⑪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관련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보상금 ([]휴업보상, []장해보상, []성폭력 피해보상), 의료지원금 ([]향후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의료지원금은 상이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관련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제적등본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관련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이민, 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3.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 1부(관련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 1부(관련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그 밖의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 향후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병원등(국립종합병원, 전국의 과대학부속병원, 보상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향후 치료비추정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란에는 신청하려는 유형에 "√"를 표시합니다.
- ②란에는 관련자의 당시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③란에는 상이자의 경우 상이 직전 3개월간 월수입액의 평균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피해 직전 3개월간 월수입액의 평균을 적습니다.
- ④란에는 다리·팔 등 상이를 입은 부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⑤란에는 골절상·자상(찢린 상처) 등 구체적 병명을 적습니다.
- ⑥란 및 ⑦란에는 요양으로 인해 월급을 받지 못하는 등 수입손실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손실액을 적습니다.
- ⑧란에는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 내용과 추정 치료비를 의사의 향후 치료비추정서에 따라 적습니다.
- ⑨란에는 간병이 필요한지의 여부와 그 간병기간을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적습니다.
- ⑩란에는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보장구 명칭과 시가 및 내구연수(사용연수)를 적습니다.
-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⑪란에 적지 않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마)에 적습니다.
- []에는 신청인이 신청하려는 해당 각 항목에 "√"를 표시합니다.

보상금등 지급신청서(그 밖의 관련자)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관련자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당시 직업		
신청 사유	① 관련자 유형		
	☐ 수배 ☐ 연행 ☐ 구금 ☐ 공소기각 ☐ 유죄판결 ☐ 면소판결 ☐ 해직 ☐ 학사징계		
	※ 발생 시기: 년 월 일 ※ 발생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관련 경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라)에 작성		
②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관련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본인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보상금등 수령위임장 1부(이민·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란에는 관련자 유형 중 해당항목 []에 “√” 표시를 합니다.
-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②란에 적지 않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마)에 적습니다.

경 위 서	
관련자 유형	☐ 사망 ☐ 행방불명 ☐ 상이 ☐ 질병·후유증 사망 ☐ 성폭력 피해 ☐ 수배 ☐ 연행 ☐ 구금 ☐ 공소기각 ☐ 유죄판결 ☐ 면소판결 ☐ 해직 ☐ 학사징계
일시	
장소	
사 건 경 위	※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합니다. ※ 성폭력 피해의 경우, 피해 발생 시기·장소, 피해 경위, 피해 횟수, 가해 인원 등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피해가 여러 차례인 경우 각 피해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입 증 방 법	

[별지 제1호서식](마) <개정 2023. 6. 29.>

신 청 인 표 시

1	성명(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관련자와의 관계	의		전 화 번 호	
2	성명(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관련자와의 관계	의		전 화 번 호	
3	성명(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관련자와의 관계	의		전 화 번 호	
4	성명(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관련자와의 관계	의		전 화 번 호	
5	성명(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관련자와의 관계	의		전 화 번 호	
6	성명(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관련자와의 관계	의		전 화 번 호	

○위 신청인
의
대리인
(인)

21232-00144민

90.8.3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보상결정서						
접수번호		보심위		보상		제 호
관련자	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	
	당시주소					
신청인[2명 이상은 별지 제1호서식 (마) 사용]	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관련자	의		전화번호		
주문						
유족별	재산상속인					
지급액	금액 (을)					
보상액내역 및 결정이유는 뒷면에 기재						
202 년 월 일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①인 위원 ①인 위원 ①인 위원 ①인 위원 ①인 위원 위원 ①인 위원 ①인 위원 ①인 위원 ①인 위원 ①인 위원 위원 ①인 위원 ①인 위원 ①인 위원 ①인 위원 ①인 위원 위원 ①인 위원 ①인 위원 ①인 위원 ①인 위원 ①인 위원 위원 ①인 위원 ①인 위원 ①인 위원 ①인 위원 ①인 위원						

(뒤쪽)

보 상 액 내 역	보 상 금	1. 일실(逸失)수익(사망·행불)	
		2. 휴업보상(상이)	
		3. 장해보상(상이)	
		4. 성폭력 피해 보상	
	의 료 지 원 금	5. 향후치료비	
		6. 간병비	
		7. 보장구구입비	
	생 활 지 원 금	8. 생활지원금	
	합계		
기지급액			
지급액			
결정이유			
[관련여부]			
[보상액산출]			

보상결정통지서

접수번호: 보심위 보상 제 호

성명:

주소:

귀하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와 같이 보상금등의 지급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니 아래 요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1. 보상결정에 동의할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람 (1) 동의 및 청구서 1부

(2) 보상결정서 정본 1부

(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용도 : 보상금등의 청구 및 수령용)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신청인이 2인이상의 경우 - 신청인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 대리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50원 수입인지첨부),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람

(뒤쪽 계속)

(앞쪽에서 계속)

2. 보상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1) 재심신청을 할 경우

- 보상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재심신청을 할 수 있음
- 보상결정 내용중 장애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병원등(국립종합병원·전국의과대학부속병원·보상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애진단서를 첨부하시기 바람

(2)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첨부 : 1. 보상결정서 정본 2부

2. 동의 및 청구서 용지 1부

3. 재심신청서 용지 1부

년 월 일

5 · 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보상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이하 “보상지원위원회”라 한다)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u>재정경제부장관 · 법무부장관</u> · <u>행정안전부장관 · 보건복지</u> <u>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기</u> <u>획예산처장관</u> 및 <u>법제처장</u> 2. (생 략) ② · ③ (생 략) <u><신 설></u>	제2조(보상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 -----. 1. <u>재정경제부장관 · 법무부장관</u> · <u>행정안전부장관 · 보건복지</u> <u>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성</u> <u>평등가족부장관 · 기 획 예산 처</u> <u>장관</u>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u>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다음</u>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u>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u> <u>수 있다.</u> 1. <u>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u> <u>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2. <u>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u> <u>있는 경우</u> 3. <u>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u> <u>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u> <u>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u> <u>우</u>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신설>

<신설>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른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에 성폭력 피해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성폭력피해조사소위원회를 둔다.

④제3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조사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가폭력(「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과 여성폭력(「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여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성폭력피해조사소위원회의 위원 위촉사실을 보상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⑤ 성폭력피해조사소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의 인정 및 피해 정도의 판단을 위해 신청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진술 청취, 사실확인 및 증거자료 확보 등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피해 사실·유형·정도 및 별표7의 가중요소 해당 여부를 종합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제3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조사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제12조의2(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심의 특례) ①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은 별표6으로 정하는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그 피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성폭력 피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별표7로 정하는 성폭력 피해 가중요소를 고려하여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노동력상실률 및 장애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피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은 100분의 15를 기본값으로 한다. 다만,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애등급에 따른 노동력 상실률을 기본값으로 하되, 해당 장애등급에 따른 노동력 상실률이 100분의 1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기본값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값에 다음 각 호의 가산비율을 모두 합산하여 노동력 상실률을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노동력 상실률은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다.

1. 중대유형 피해를 입은 경우:
별표7의 중대유형 각 요소에 따른 가산비율. 다만, 가중 요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그 가

운데 가산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 중복피해 또는 특수피해를 입은 경우: 별표7의 중복피해 및 특수피해 각 요소에 따른 가산비율

④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노동력 상실률과 일치하는 장애등급을 별표3에 따라 적용한다. 일치하는 노동력 상실률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상위의 노동력 상실률에 해당하는 신체장애 등급을 적용하여 최종 노동력 상실률을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기준은 상이자에 대한 기준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때 관련자 또는 유족이 성폭력 피해를 원인으로 이미 상이자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보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한다. 다만, 성폭력 피해와는 다른 원인으로 상이자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제24조(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 영 시행일에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의 <u>지급신청</u>에 관한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u>이를</u> 공고해야 한다. 1. ~ 8. (생략)	<u>를 공제하지 아니한다.</u> <u>⑦ 보상심의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는 성폭력 피해 관련 사항을 심의·결정할 때 국가폭력과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사건 당시의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으로 인하여 가족·공동체·지역사회 및 교육·고용·의료·수사·재판 등 각 영역에서의 불이익한 처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제24조(공고) ----- ----- ----- <u>지급 신청</u>----- ----- ----- ----- --- <u>공고</u>-----. 1. ~ 8.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3262